

I 사전당첨자 서류제출 일정 I

구분	일자	신청장소
서류제출 기한	2022.09.02(금) ~ 2022.09.08(목)	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086-7 영종 A41BL 한신더휴 분양 홍보관

- 사전당첨자의 자격검증 서류제출을 위한 주택홍보관 방문 시 동반 1인까지 입장이 가능합니다.(대리인 위임 시 대리인 외 동반 1인까지 입장 가능)
- 사전당첨자는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정당한 당첨자임이 확인되지 않아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됩니다.
- 자격검증 서류제출 방문 및 계약체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영종하늘도시 A41BL 한신더휴 홈페이지(<http://www.vj41-thehue.com>)를 통해 '사전방문예약제'로 진행될 예정이오니, 영종하늘도시 A41BL 한신더휴 홈페이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I 사전당첨자 제출 서류 I

구분	서류유형		구비서류	기준	주요 확인 사항
	필수	해당			
공동	○		당첨자 자격요건 서약서	본인	- 현장접수처 비치
	○		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	본인	- 현장접수처 비치
	○		인감증명서	본인	- 본인발급용에 한함 (□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)
	○		인감도장	본인	- 인감증명서 상 도장 대조
	○		신분증	본인	- 주민등록증, 여권(2020년 12월 21일 이후 신규발급분은 제외), 운전면허증 등
	○		주민등록표등본(전체포함)	본인	-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
	○		주민등록표초본(전체포함)	본인	-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사항 · 사유 및 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
	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- 세대원 및 부양가족 관계 확인
	○		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	본인	- 연속 90일 초과 해외체류 여부 확인(기록대조일:본인 생년월일~모집공고일)
	○		주민등록표등본(전체포함)	배우자	-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
해외 체류 단신 부임	○		복무확인서	본인	- 10년 또는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기타/당해지역 청역 시 복무기간 확인
	○		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	본인	- 국내기업 소속(건강보험,재직증명서,출장명령서)/해외기업 소속(현지 발급서류,번역공증)
	○		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	세대원	- 등본상 세대원 및 가족관계증명서 상 미성년 자녀 모두 제출
	○		여권, 비자 발급내역 등	세대원	- 신청자의 해외체류기간 내 세대원 해외체류 시 동일 국가 체류여부 추가 확인
생애 최초	○		주민등록표초본(전체포함)	피부양 직계존속	-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
	○		자격요건 확인서	본인	- 현장접수처 비치
	○	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- 혼인여부 및 혼인신고일 확인(단독세대도 필수 제출)
	○			자녀	- 만 18세 이상 자녀 혼인관계 확인
	○		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	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	- 신청자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 (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)
	○		소득증빙서류		- 사전 당첨자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(단,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직계 존비속 모두의 소득입증서류)
	○		비사업자 확인각서		- 현장접수처 비치,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
	○		사실증명원(신고소득사실없음)	본인	- 비사업자 확인각서를 제출한 무직자는 신고사실 없음을 확인(전년도 기준)
	○		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	본인	- 신청자의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확인
	○		부동산 소유현황	본인 및 세대원	- 소득기준 초과 대상자(부동산 자산 33,100만원 이하 확인)
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배우자	- 재혼배우자 전혼자녀 부양가족 산정 시(신청자 본인 등본 등재 한함)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전 자녀를 출산한 경우	
○		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	본인 또는 배우자	- 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중인 경우, 임신증명서류(임신진단서 외 불가) 제출	
○		임신증명 및 출산이행각서		- 현장접수처 비치, 임신의 경우	
○		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		- 입양의 경우	
대리인 추가 서류	○		위임장	본인	- 현장접수처 비치(청약신청자 인감도장 날인 확인)
	○		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	본인	- 본인발급용 확인(용도:주택공급신청 위임용) ※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
	○		대리인 신분증	대리인	- 대리인 본인 확인
	○		대리인 도장	대리인	- 서명가능
주택관련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				해당자	-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(가옥대장등본 포함)
				해당자	- 무허가 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
				해당자	- 소형·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(주택공시가격증명원, 등기사항전부증명서)
				해당자	-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

※ 상기 제 증명서류는 사전당첨자 입주자모집공고일(2022.08.12.)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,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 (단,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,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.(인감증명서 용도 : 주택공급 계약 체결용))

※ 주민등록 등·초본 발급 시 “세대주 성명 및 관계”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,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“세대주 성명 및 관계”에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※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(배우자, 직계존·비속 포함)으로 간주함.

※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체결 시 대리인 방문이 불가하며 본인이 방문하여야 함.

※ 재외동포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증,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(또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1부)